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1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이영실, 김종무, 임종국,
정진술, 김태호, 문장길,
김경영, 박기재, 박순규,
이은주, 송아량, 이승미
의원 (12명)

1. 제안 이유

- 최근, 학교 주변 등에서 과속 및 음주운전 등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, 장애인,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하여 관할 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가. 시장이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하여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4조의2)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「도로교통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접근성”을 “접근성 및 교통안전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교통안전 지도) 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·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접근성 및 교통안전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제24조의2(교통안전 지도) 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요 횡단 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의 2(교통안전 지도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지도반 운영비용

나. 전제

-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,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지도반 운영비용이 발생
 - 현재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(교통안전지도사 등)*에 따라,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

*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(교통안전지도사 등)

-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·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·운용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·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·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- 교통지도반을 운영해야 하는 구역은 '19년 9월 현재 기준 총 141개소(노인 보호구역 134개소, 장애인 보호구역 7개소)이며, 이후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
- 교통지도반 인원의 연평균 근무일('18년 기준)은 고용노동부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에 근거하여 240일 적용
- 교통지도반 운영을 위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

- 5년(2020년부터 2024년)

라. 방법

-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기 위해 비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지도사 운영비용을 적용하여 추정
 -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당 배정 인원 : 2.3명(지도사 538명/대상학교 234개교)
 -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사 시간당 임금(서울시 생활임금 '19년 기준) : 10,148원
 -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사 1일 활동시간 : 1.6시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≒ 6,318,713천원(연평균 1,263,743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0)	(2021)	(2022)	(2023)	(2024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교통지도반 운영비용 (안 제24조의2)	1,263,743	1,263,743	1,263,743	1,263,743	1,263,743	6,318,713
	소계(b)	1,263,743	1,263,743	1,263,743	1,263,743	1,263,743	6,318,713
□ 총 비용(b-a)		1,263,743	1,263,743	1,263,743	1,263,743	1,263,743	6,318,713

4. 덧붙이는 의견

- 의견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 담당관 남승우
 정책조사팀장 여차민
 분석관 이수아
 ☎ 02-2180-7944

e-mail : sua887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지도반 운영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-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지도반 총 운영비용 ≒ 6,318,713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노인보호구역과장애인보호구역의교통지도반운영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연간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지도반 운영비용
= 교통지도반 운영 구역(141개소) × 구역당 필요 인원(2.3명) × 시간당 임금(10,148원) ×
1일 활동시간(1.6시간) × 연간 평균 근무일(240일)
= 1,263,743천원